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은 법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윤리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5조”를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협회는”을 “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④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목을 아목으로, 아목을 자목으로,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사. 법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의3호	
1)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2 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50
3)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200
4)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50

부 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② (생략) ③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90조(교육의 실시)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90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5조제1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은 법 제31조,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그 직으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윤리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협회

<신설>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같은 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5조제1항-----

2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

3.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15조제1
항 및 제2항-----

----- 협회와 한국부동산
원은 -----

-----.

④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윤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 201 - 3386